

2026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 공고

경기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내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6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공고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6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 관련 조례 :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제9조(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대외 신인도, 기업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26년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 선정규모

- (신규인증) 기업 50개사(공공기관 별도)
- (재인증) 2023년 인증기업으로 유효기간이 2026년에 종료되는 기업 및 기관

□ 인증 기준 ※ 붙임(참고1) 참조

-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실행의지, 기업 대외신인도(신규인증), 기업 안정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등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신규인증, 재인증 유효기간 동일

□ 신청 자격

- (신규인증) 사업공고일 현재 업력 2년 이상(2024년 4월 6일 이전 사업자등록)의 주사무소(본사)나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
- (재인증) 2023년 경기가족친화 인증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이 2026년에 종료 예정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

< 업력 기준 >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 소재지 기준 >

-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본점소재지
- ▶ (공장)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신청 및 평가 제외대상

< 제외기업 >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사업자 선정 전]

-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적용되는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판결이 확인된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 단, 11개 법 위반 사실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참고2)에 해당하는 경우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제출 시 감점 미적용

[사업자 선정 후]

- ▶ 인증 유지기간(3년) 내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 허위증빙 제출 등)
 - 인증기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인증 후 인증유지 기간 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분야 11개 법 위반* 확인 시
 -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적용 대상인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인 되는 경우 해당되며, 법 위반 기간 판단 기준일은 공모일 이후부터 인증 유지기간동안 적용
- ※ 단, 11개 법 위반 사실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참고2)에 대하여 법 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제출 시 취소 유예하며, 이행각서 제출 후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함

<인증 취소 조치>

- 인증 취소 처분 통보일부터 인센티브 중단 및 인증서·인증패(현판) 회수
- 3년 간 경기도가족친화인증사업 참여 자격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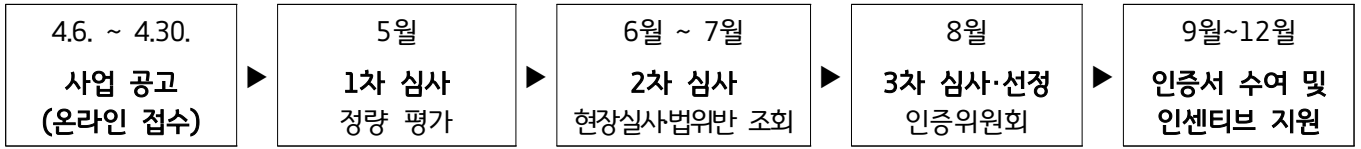
-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적용 법률>

- | | | | |
|------|----------|-----------|-----------|
| (공정) | ① 공정거래법 | ② 하도급법 | ③ 표시광고법 |
| (노동) | ④ 근로기준법 | ⑤ 산업안전보건법 | |
| (환경) | ⑥ 폐기물관리법 | ⑦ 대기환경보전법 | ⑧ 소음진동관리법 |
| (납세) | ⑩ 국세기본법 | ⑪ 지방세기본법 | ⑨ 물환경보전법 |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개별 통보하며, 사실관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 제출 기회 부여

3. 인증절차 및 심사내용



- **1차 심사** : 가족친화경영 예산현황, 기업 신인도, 기업 안정성/고용 안정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산점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신규인증 선정 기업의 **1.5배수 선정**(단, 공공기관과 재인증 기업은 절대평가 실시)
- **2차 심사** : 1차 심사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및 온라인 재직자 만족도 설문조사, **관련법(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위반사실 조회**
- **3차 심사** : 「경기도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인증기업 인센티브

- 인증서, 현판 또는 인증패 수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 ※ 인증패 또는 현판은 인증 당해연도 1회 한하여 제공, 분실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추가 제작은 기업 자부담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등 20개 기관 74종 인센티브 혜택
 - ※ 대상 기업별 혜택 상이
- 가족친화경영 활동 지원금 연내 지원
 - 지원대상 : **2026년 신규인증 및 재인증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공공기관 제외
 - 지원시기 : 2026년 9월 ~ 12월
 - 지원규모 : (신규)기업당 최대 500만원, (재인증)기업당 최대 20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 가족친화제도 운영관련 **2026년도 추진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

지원분야	세부항목	지원사항
건강관리 지원	· 사내 건강관리 시설·비품 구축 · 질병예방접종, 의료비, 건강 검진비 지원 · 체력증진, 심리상담 등 기타 건강관리지원	직원 건강관리 관련 비용
노동환경개선	· 휴게공간, 수유실 등 직원복지 시설 구축 · 기타 업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시설 구축, 환경개선 비용
가족친화문화조성	· 직원 가족초청 행사(워크숍, 직장체험) · 직원 개별 가족 단위 문화행사 지원 (뮤지컬, 공연, 전시, 영화 관람 등)	시설 대관, 차량 임차료 행사운영에 필요한 비용 외부 강사료(원고료) 문화행사 입장권 구입비
교육 및 소통	· 가족친화경영 관련 외부강사 초빙 교육 · 직원 워크숍, 단합,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사내 직원 간 문화행사 운영	
기타	·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원이 타당하고 판단되는 항목	

□ 유의사항

- 접수 이후에도 평가를 위한 서류 보완 요청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협조가 어려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배제할 수 있음.
- 본 사업공고에 신청하는 기업(관)은 공고문, 심사항목 및 내용, 신청서 양식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 시 부주의로 인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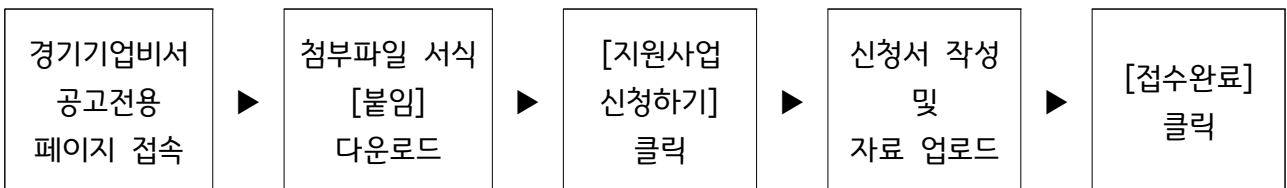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30.(목) 17:00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으며, 접속 지연 등으로 인한 마감 시각 이후 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 (공고확인) 경기도청, 경기기업비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누리집 (https://www.gg.go.kr/gg_good_corp) 공고
- (신청접수)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온라인 접수
- ※ 반드시 경기기업비서(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접수 처리됨

□ 신청절차



-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는 ① 필수제출 서류, ② 증빙서류 1(실행제도 및 실적), ③ 증빙서류 2(가산점_해당시), ④ 증빙서류 3(수상인증 이력_신규인증만 해당)로 분류하여 업로드
 - 별첨 파일에는 복수의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파일당 10MB 용량제한이 있음
 - 묶음파일 용량의 제한으로 업로드가 안 될 경우, 순번에 맞추어 각각의 파일을 업로드 하여도 무방함.
-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체크하고 **접수완료**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완료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유의사항
필수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식 1~4호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4. (해당시) 공장등록증명 5. 국세완납증명서(유효발급분) 6.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발급분) 7.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26년 3월 귀속분) 8. 재무제표(2024년, 2025년) 9.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증빙자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파일명 '기업명_서류' · 각각의 PDF파일로 업로드 · (재무제표) 2025년도 미결산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확인 기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4~2025년도 자료로 대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 신고 사업장의 경우, 2024년, 2025년 하반기 신고분을 제출 ·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 부분에 기재한 증빙자료 제출(서류 파일명 기업명_증빙서류1)
가산점 (선택제출) ※ 가산점은 최대 5건까지 반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가족친화경영 컨설팅 협약서('23년~'25년) 2.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서 사본 3.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 4. 생활임금제 실천기업(서약서) 5. 도 주관 부모교육 참여 기업 확인 서류('23년~'25년) 6. 도 주관 성평등교육 참여기업 확인 서류 ('23년~'25년) 7.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8.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 사본(유효기간 내) 9. 인구교육 참여기업 확인 서류('23년~'25년) 10. 자녀대상 가족돌봄휴가 10일 초과 사용기업 (가족돌봄 사유의 휴가신청서, 명단 등) 11. 道 주 4.5일제 참여기업 ('23년~'25년) 12.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참여기업 (재인증만 해당, '23년~'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파일명 '기업명_증빙서류2' ·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 · 4.5일제, 0.5&0.75잡 참여기업 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신청서류 내 가점 해당 여부 체크)
수상·인증 이력 (선택제출-신규 인증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신인도 수상, 인증이력(도지사, 장관, 시장·군수 및 타 공공기관 표창 수상, ISO인증, 혁신형 인증, 타 기관으로부터 우수 기업/기관 지정 등 표창, 인증서, 지정서, 확인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파일명 '기업명_증빙서류3' ·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

□ 사업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 Tel. 031-259-6287 E-Mail : ggwp@gbsa.or.kr

□ 경기기업비서 전산 문의처 : 031-259-6299

□ 참고자료

1. 심사항목 및 내용
2. 인센티브 현황
3.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참고 1 - 인증심사 항목]

2026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심사항목 및 내용

○ 신규인증 심사항목

심사요소	심사항목	심사의 내용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실행의지(10)	경영층의 관심 및 실행의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추진의지에 관하여 평가한다. -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경영자의 방침 및 비전, 실행조직운영, 교육 및 소통노력	
	가족친화 경영 예산 현황	가족친화경영에 필요한 예산집행 증가율에 관하여 평가한다. - (당기 복리후생비/전기 복리후생비)×100-100 - 복리후생비=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복리후생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	
기업 대외 신인도(5)	수상, 인증이력	최근 3년간 외부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이미지(각종 수상, 인증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 도지사, 장관, 시장·군수 및 타 공공기관 표창 수상 - ISO인증, 혁신형 인증, 타 기관으로부터 우수 기업/기관 지정 등	
기업의 안정성(10)	매출액 증가율, 상시고용 인원 규모	기업 일반현황(업력, 매출액증가율, 종업원수)에 관하여 평가한다. - 매출액증가율=(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 - 공고일 기준 상시고용인원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70)	공통(40)	유연근무 제도 실행 여부 및 근무 환경 유연성	노동자의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 및 근무공간의 탄력성을 제공하는 제도 및 실행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시간제근무제,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연차사용촉진 등
		노동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노동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관련 유익한 노동환경 조성 제도 및 실행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출산 전휴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산 휴가지원, 출산 축하 경조금 지급, 출산장려금 및 선물 지원, 예비맘표시제, 임신모 편의용품 지원(전차파 방지 앞치마, 태아보호 쿠션, 태고관련 서적등), 임부 전용주차구역, 난임부부지원, 입양휴가, 출산장려를 위한 다지녀 가정지원, 희망부서 근거리 근무지 배치 등
		노동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노동자의 자녀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및 실행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비 지원, 학자금지원 및 대출, 입학축하금,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가족수당 지급, 사내문화센터 교육, 전문기관 이용 할인, 육아 인터넷 정보제공, 육아용품 장터 등
	선택(택3)(30)	노동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노동자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생애주기별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실행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관리시설, 단체보장성 보험, 진료혜택, 의료비지원, 전염병 무료접종, 절주 및 금연 캠페인, 노동자 지원(멘토링, 재무설계, 자기계발 등) 및 상담제도, 부모/부모교육, 생애주기별 지원(미혼/결혼준비, 결혼/임신출산기, 영유아 육아기, 초중고 자녀교육기, 자녀독립/은퇴준비기) 등
		노동환경 개선 노력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투자를 평가한다. - 사원휴게시설(남성, 여성전용), 구내식당 운영, 기숙사 지원, 사택 지원, 통근버스 지원, 사내 동호회 지원, 기타 복리후생시설 운영(건강관리 시설 외) - 작업장 환경개선시설 구축,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공정, 시설 및 시스템 개선(MES, ERP 개선,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등) -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추진계획 수립 등)
		가족지원 제도 및 경조사 지원제도	노동자의 가족 관련 지원 제도 및 실행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가족돌봄휴직/휴가/단축근무제도, 가족간병지원, 가족의료비지원, 가족건강검진, 사내커피지원, 커피매니징서비스, 사내 및 협력업체식당 지원, 본인 및 가족 경조금 지원, 경조휴가, 상조서비스 및 장례지원 등
가점(5)	항목별 점수가산	가족친화 문화조성	노동자의 가족관계 증진,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실행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가정의날(정시퇴근)운영, 가족초청행사, 배우자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장기근속휴가, 리프레시휴가, 포상휴가, 휴가비지원, 휴양시설 제공, 가족단위 문화&여행프로그램, 주말농장, 주말캠프, 휴가체험수기 및 휴가사진 공모전 등
		가족친화 사회공헌	지역사회 및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 및 실행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소외계층을 위한 주말봉사활동, 저소득다자녀가정지원, 다문화가정교육 및 생활지원프로그램, 독거노인지원, 장애인가정 지원, 한부모가정지원, 다양한 계층 후원활동(사회적 활동 제외) 등
가점(5)	항목별 점수가산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1점, 경기가족친화컨설팅 수행기업 1점, 경기도 여성CEO(경영인) 기업 1점, 생활임금제 실천기업 1점, 도 주관 부모교육(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특강·상담 또는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참여 기업 1점, 도 주관 성평등 교육 참여기업 1점,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1점, 인구교육 참여 기업 1점,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기업 1점, 자녀대상 가족돌봄휴가 10일 초과 사용기업 1점, 도 주4.5일제 참여기업 1점	
가족친화경영 실행실태(10)	노동자의 전반적 만족도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지도, 이용의 용이성과 활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만족수준에 관하여 평가한다. -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	
인증위원회 평가	인증 심사결과 평가 및 최종 선정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하며 최종 선정한다.	
총 110점			

※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선택사항은 다섯 가지 항목 중 신청기업(관)에 유리한 3가지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부분 작성

○ 재인증 심사항목

심사요소	심사항목	심사의 내용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실행의지(10)	경영층의 관심 및 실행의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추진의지에 관하여 평가한다. -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경영자의 방침 및 비전, 실행조직운영, 교육 및 소통노력	
	가족친화 경영 예산 현황	가족친화경영에 필요한 예산집행 증가율에 관하여 평가한다. - (당기 복리후생비/전기 복리후생비)×100-100 - 복리후생비=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복리후생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	
기업의 안정성(10)	매출액 증가율 상시고용 인원 규모	기업 일반현황(업력, 매출액증가율, 종업원수)에 관하여 평가한다. - 매출액증가율=(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 - 공고일 기준 상시고용인원	
가족친화 제도 실행사항(70)	공통(40)	유연근무 제도 실행 여부 및 근무 환경 유연성	노동자의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 및 근무공간의 탄력성을 제공하는 제도 및 실행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시간제근무제,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연차사용촉진 등
		노동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노동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관련 유익한 노동환경 조성 제도 및 실행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출산 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지원, 출산 축하 경조금 지급, 출산장려금 및 선물 지원, 예비맘표시제, 임신모 편 의용품 지원(전자파 방지 앞치마, 태아보호 쿠션, 태교관련 서적등), 임부 전용주차구역, 난임부부지원, 입양휴가,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지원, 희망부서 근거리 근무지 배치 등
		노동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노동자의 자녀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및 실행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비 지원, 학자금지원 및 대출, 입학축하금,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가족수당 지급, 사내문화센터 교육, 전문기관 이용 할인, 육아 인터넷 정보제공, 육아용품 장터 등
	선택(택3)(30)	노동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노동자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생애주기별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실행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관리시설, 단체보장성 보험, 진료혜택, 의료비지원, 전염병 무료접종, 절주 및 금연 캠페인, 노동자 지원(멘토링, 재무설계, 자기계발 등) 및 상담제도, 부부/부모교육, 생애주기별 지원(미혼/결혼준비기, 결혼/임신출산기, 영유아 육아기, 초중고 자녀교육기, 자녀독립/은퇴준비기) 등
		노동환경 개선 노력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투자를 평가한다. - 사원휴게시설(남성, 여성전용), 구내식당 운영, 기숙사 지원, 사택 지원, 통근버스 지원, 사내 동호회 지원, 기타 복리후생시설 운영(건강관리 시설 외) - 작업장 환경개선시설 구축,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공정, 시설 및 시스템 개선(MES, ERP 개선,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등) -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추진계획 수립 등)
		가족지원 제도 및 경조사 지원제도	노동자의 가족 관련 지원 제도 및 실행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가족돌봄휴직/휴가/단축근무제도, 가족간병비지원, 가족의료비지원, 가족건강검진, 사내커피지원, 커피매니징서비스, 사내 및 협력업체식당 지원, 본인 및 가족 경조금 지원, 경조휴가, 상조서비스 및 장례지원 등
		가족친화 문화조성	노동자의 가족관계 증진,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실행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가정의날(정시퇴근)운영, 가족초청행사, 배우자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장기근속휴가, 리프레시휴가, 포상휴가, 휴가비지원, 휴양시설 제공, 가족단위 문화&여행프로그램, 주말농장, 주말캠핑, 휴가체험수기 및 휴가사진 공모전 등
	가족친화 사회공헌	지역사회 및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 및 실행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소외계층을 위한 주말봉사활동, 저소득다자녀가정지원, 다문화가정교육 및 생활지원프로그램, 독거노인지원, 장애인가정 지원, 한부모가정지원, 다양한 계층 후원활동(사적인 활동 제외) 등	
	가점(5)	항목별 점수가산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1점, 경기가족친화컨설팅 수행기업 1점, 경기도 여성CEO(경영인) 기업 1점, 생활임금제 실천기업 1점, 도 주관 부모교육(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특강·상담 또는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참여 기업 1점, 도 주관 성평등 교육 참여기업 1점,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1점, 인구교육 참여 기업 1점,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기업 1점, 자녀대상 가족돌봄휴가 10일 초과 사용기업 1점, 道 주4.5일제 참여기업 1점,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집 지원사업 참여기업 1점
	가족친화경영 실행실태(15)	노동자의 전반적 만족도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지도, 이용의 용이성과 활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만족수준에 관하여 평가한다. -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
인증위원회 평가	인증 심사결과 평가 및 최종 선정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하며 최종 선정한다.	
총 110점			

※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선택사항은 다섯 가지 항목 중 신청기업(관)에 유리한 3가지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부분 작성



2026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센티브

| 20개 기관 74개 항목 |



경기도	지원내역	대상
국제통상과(1)	• 민관합동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반려동물과(1)	•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중 상용화 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3점] ※ 각종 기업 인증 개수별 기점 부여 (기업 인증 개수 1~2개: 3점 3개 이상: 5점)	중소기업
사회혁신기획과(1)	•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1점]	중소기업
세정과(2)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유공납세자 혜택) - 33개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 등 할인 (대표자) - 도 금고(농협, 국민) 여신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할인 (사업자) -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차량 1대)	중·소 기업·기관
조세정의과(1)	• 경기도 성실 납세자 중 유공납세자 선정 시 우선 선정	중·소 기업·기관
지역금융과(2)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적용 [추가이차보전율 +0.5%] ※ '26년 일가정양립기업자금 이차보전율 1.7%p 지원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신청 시 [가점5점]	중소기업
회계과(1)	•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2점]	중·소 기업·기관
고용병등과(7)	• 인증서·인증패(현판) 교부	중·소 기업·기관
	•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기업 홍보물에 사용권 부여)	중·소 기업·기관
	• 경기도 누리집에 인종기업 소개	중·소 기업·기관
	• 경기가족친화 우수기업 도지사 포상	중·소 기업·기관
	•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중·소 기업·기관
	• 신규인증 중소기업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 지원(최대 500만원)	중소기업
	• 재인증 중소기업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 지원(최대 200만원)	중소기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R&D·산업지원

지원내역	대상
• R&DB센터, 광교비즈니스센터 입주 심사 시 [가점5점]	중소기업
• 가구 기업 제품개발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신청 시 [가점1점]	중소기업
•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1점]	중소기업
•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섬유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2점]	공공제외
•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공공제외

수출·글로벌·마케팅

지원내역	대상
• 해외 G-FAIR 사업 신청 시 [가점3점]	중소기업
• 경기도 무역역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경기도 통상축진단'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舊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지원사업) [가점2점]	중소기업
•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수출상담회 파견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舊 해외바이어 초청 은오프라인 수출상담회 파견)	중소기업
• GMS(GBC Marketing Service)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해외 물산업 통상축진단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인증·ESG·디지털·입주·기타

지원내역	대상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1점]	중소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1점]	중소기업
•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가점2점]	중소기업
•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1점]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1점]	공공제외
• 판교테크노밸리 공공건물 입주심의위원회 심사 시(esg인증사업 가점) [가점1점]	중·소 기업·기관

시·군 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역	대상
· 시·군 지원 사업 : 7개 시군, 9개 항목		중소기업
- 양주시 : 해외 섬유전시회 참가지원 [가점1점],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 평택시 :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 안성시 :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가점1점], 생산레벨업 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 파주시 :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 포천시 : 섬유자투리원단 리사이클링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 이천시 : 생산레벨업 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 광주시 : 생산레벨업 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산업·기술개발·제조·R&D

구분	지원내역	대상
경기대진테크노파크(1)	· 가구 제조공정 자동화 및 인증 지원 사업 [가점2점]	중소기업
경기섬유산업연합회(1)	·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한국섬유소재연구원(2)	·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중견
	·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중견

수출·글로벌·전시·인증

구분	지원내역	대상
경기FTA통상진흥센터 (1)	· FTA 통상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1)	· 경기 수출 기회 바꾸어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킨텍스(3)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도인종 1개 10점, 2개 15점, 3개 20점]	중소기업
	· 해외전시회개별참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3점]	중소기업
	· 해외전시회 단체관(단체참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3점]	중소기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1)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1)	· KITA무역진흥자금 신청 시 [가점5점]	중소·중견

판로·마케팅·온라인·전시·인증·입주·교육·기업지원

구분	지원내역	대상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1)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경기테크노파크(5)	· 경기TP단지 입주 선정 평가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신청 시 무심사 합격	중소기업
	· 경기행복삼 입점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2점]	중소기업
	· 시·군 지원 사업 : 6개 시군, 6개 항목	중소기업
	- 하남시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 성남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 안산시 청년창업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 광주 e-장터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 양주시 중소기업 온라인플랫폼 마케팅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 양평군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 사업 [가점1점]	중소기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	·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재단(1)	·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내 온라인 채용관 개설 지원	중·기업·기관

금융보증·시설·복지·비용지원

구분	지원내역	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2)	· 보증 평가 시 [가점1점]	중소기업
	· 보증 요율 인하 [0.2%]	중소기업
경기문화재단(1)	· 강당, 강의실 등 사용료 [50% 감면, 도 산하 공공기관]	중·공공
경기도여성비전센터(1)	· 강당 등 사용료 (인증기업 주최 교육 및 비영리 행사) [100% 감면]	대기업 제외
아쿠아플라넷(1)	· 아쿠아플라넷 입장료 할인 [일산점 30%, 광교점 20%] ※ 인증서스캔본 및 사원증 제시	중·기업·기관

인증·품질·경영

구분	지원내역	대상
한국표준협회 경기강원지역본부(5)	· 최고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10% 할인]	중소·중견
	· ' 으뜸상품인증 ' 신청비(300,000원) [면제]	중소·중견
	· ' 로하스인증 ' 신청비(300,000원) [면제]	중소·중견
	· 국제인증 최초 신규 취득비용 [20% 할인]	중소·중견
	· 품질경영활동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1점]	중소·중견

※ 주로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지원 내용은 기업·기관별 상이

[참고 3 -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6-2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8.

경 기 도 지 사

-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 적용사업 : 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사업유형별 적용제외 · 유예사업
 -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자금·용차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적용법률
 -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붙임 1)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
 -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협약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4) 제출 시 평가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다.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도·시군 조회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협약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